

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3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3월 5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은 조식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법률상 위임없이 교육감에게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“시행해야 한다” 를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(안 제4조제1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중 “시행해야 한다”를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 설>	<p>제4조(기본계획) ① 교육 감은 조식 지원 및 조 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 청 조식 지원 등을 위 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 본계획이라 한다”)을 수립하고 <u>시행해야 한 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조(기본계획) ① 교육 감은 조식 지원 및 조 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 청 조식 지원 등을 위 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 본계획이라 한다”)을 수립하고 <u>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 다.</u>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,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조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.

제4조(기본계획) ① 교육감은 조식 지원 및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이라 한다”)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조식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
2. 조식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방안
3. 조식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4.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
5. 그 밖에 조식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조사 등)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학교별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 한다.

제7조(종전의 제4조)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

다)”을 “교육감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교육 및 홍보) 교육감은 조식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조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4조(기본계획) ① 교육감은 조식 지원 및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이라 한다”)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.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식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. 조식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방안 3. 조식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.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5. 그 밖에 조식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p><신 설></p>	<p>제5조(조사 등)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학교별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 한다.</p>
<p>제3조 (생 략)</p>	<p>제6조 (현행 제3조와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조식 운영의 지원) ① <u>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 이라 한다)</u>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제3조의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7조(조식 운영의 지원) ① <u>교육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교육 및 홍보) <u>교육감은 조식 창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</u></p>